

의성군의회 공고 제2022-1호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1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의 규
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5일

의성군의회 의장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의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3.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2월 3일까지 의성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우편번호 : 37337】

의회사무과 (☎ 054-830-6450)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데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적절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가족 지원의 일환으로 성인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의성군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